

Vol. 131 (August 2018)

인터넷 법제 동향

Laws and Policy Trends of the Internet



CONTENTS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1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8. 28.)	
<국회 제출 법률안>	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8.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8. 8.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8. 8. 14.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대표발의, 2018. 8. 27. 제안)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18. 8. 6. 제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18. 8. 13. 제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2018. 8. 28. 제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2018. 8. 28. 제안)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제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김정우의원 대표발의, 2018. 8. 21. 제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2018. 8. 22. 제안)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제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제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제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2018. 8. 27. 제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8. 8. 31. 제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제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20. 제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2018. 8. 23.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제안)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8. 8. 31. 제안)	

<미국>	30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신뢰성 기준 규칙 발표 (2018. 7. 19.)	
•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사이버보안 진단·완화 증진법안 가결 (2018. 7. 24.)	
• 오하이오 주지사,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채택 증진 및 블록체인 데이터 합법화 법안에 서명 (2018. 8. 3.)	
<영국>	36
•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 의견수렴 개시 (2018. 7. 19.)	
• 드론 운항 및 조작자 요건 강화한 항공운항명령 2018 시행 (2018. 7. 30.)	
<일본>	40
• 정부, 사이버보안전략 2018 발표 (2018. 7. 27.)	
<중국>	42
• 공업정보화부, 기업 클라우드화 추진 실행지침(2018~2020)에 관한 통지 발표 (2018. 8. 10.)	
• 공업정보화부, 2018 통신·인터넷 산업 네트워크 보안검사 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 (2018. 8. 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8. 14., 시행 2018. 11. 15.)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과 거래계약을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어 전자형태의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사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

▶ 주요내용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현행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확대하되,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8. 14., 시행 2018. 12. 13.)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제안이유

-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개별 물류기업이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짐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신속적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물류시설·장비·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화주기업에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제23조제3항 신설 등)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18. 8. 14., 시행 2019. 2. 15.)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안이유

- 최근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시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들을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구현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시범도시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단계부터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유관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대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의 한 유형으로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는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함(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 국가시범도시 내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창업 지원과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설함(제2조제8호 신설 등)
-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산업과 드론산업을 위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기업 확대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신설)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8. 28.)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이유

-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공공기관 외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

▶ 주요내용

-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30조의7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30조의7제6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31조)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이 자율주행자동차에 접목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른 차량 및 교통 기반시설과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가 송수신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 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를 사전에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관련된 정보 및 해당 차량을 임시로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챗봇(chatbot)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챗봇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의 내용 측면에서는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챗봇과 같이 정보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과 정보의 표시 형식 측면에서의 이용자 보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주요내용

-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8. 2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인증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의 경우에도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았음을 표시, 홍보 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을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최대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0항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8. 8. 2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등)
-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 함(안 제63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8. 8. 1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설치한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통합하여 저장·관리하며, 범죄 예방, 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경찰 등 제3의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통합관제센터의 단순한 형식적 운영 규정이 아닌 통합관제센터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을 명시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개인정보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며, 그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하였음

▶ 주요내용

-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목적 및 범위 등을 대장에 기재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그 영상정보 처리기를 통하여 촬영·전송된 개인정보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이용하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파기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6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대표발의, 2018. 8.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위반에 대해 사안에 따라 각각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증대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일부 의무 위반 사항은 보다 중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주요내용

- 현행법상의 과태료를 각각 1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파기 의무 해태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 암호화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보다 무겁게 과태료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18. 8.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상습적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 혁신 기술의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법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이 부재해 공공기관들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은 경영혁신을 위하여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을 경영실적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4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18. 8.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남북정상회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 4. 27.)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이 애드벌룬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어, 남북간의 화해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전단 살포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수송장비에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항 및 제20조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2018. 8.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이유

-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작 스마트 농정은 구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경제적·사회적·공간적 성격이 혼재되어 정책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는 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합리적 농정추진을 위해서는 농정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스마트 농정이 추진되어야 함
 - 스마트 농정의 기초는 농업·농촌 분야의 농지, 토지환경,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농업·농촌 정책 분야의 공간정보는 정책 현장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 자료 간 일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도와 실용성이 매우 뒤떨어져 있음
- 공간정보를 농업·농촌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 방식, 정보생산기관 간 협력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스마트 농정 구현에 제약이 있음

▶ 주요내용

- 합리적 농정 추진의 기초 인프라로서 공간정보 등을 수집·융합·분석·활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 농업·농촌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2018. 8.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이유

-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작 스마트 농정은 구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경제적·사회적·공간적 성격이 혼재되어 정책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는 농업·농촌의 성격에 맞는 과학적·합리적 농정추진을 위해서는 농정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스마트 농정이 추진되어야 함
 - 스마트 농정의 기초는 농업·농촌 분야의 농지, 토지환경,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농업·농촌 정책 분야의 공간정보는 정책 현장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 자료간 일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도와 실용성이 매우 뒤떨어져 있음
- 공간정보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 방식, 정보생산기관 간 협력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스마트 농정 구현에 제약이 있음

▶ 주요내용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업·농촌 정책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법과 제도의 규제가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임
-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산업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하지만,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산업융합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의2 신설)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기업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실증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0조의3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김정우의원 대표발의, 2018. 8.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시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 관련 기술·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관련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서비스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2018. 8.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 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의 구체적인 특례나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현재 국회에는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을 최대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 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안 제4조)
-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는 금융주력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100분의 15로 제한함(안 제5조제2항)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안 부칙 제3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향후 10년 후에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화함
(안 제3조의2 신설)
- 자율주행자동차는 아래의 안전운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안 제35조의13 신설)
 -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
 -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가 자동차 외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 자율주행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 기술, 비상 시 원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는 통신·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안 제35조의14 신설)
 - 자율주행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고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여야 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4차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분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로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임
-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의2 신설)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제1항 신설)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기업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37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신기술 기반사업을 승인받아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기업의 R&D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경우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의 5~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동 공제제도는 2018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그런데, 신기술 산업은 고위험을 수반하고,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세제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5조의5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2018. 8.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내국인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융합보안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신성장기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제금액을 투자금액의 5%~10%에서 7%~15%로 상향하고, 지원대상 요건 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에 대한 요건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신성장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8. 8. 3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 4차산업시대 신성장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상통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요건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함(안 제25조의5)
- 기업의 혁신성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존의 법률 명칭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특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97조)
- 규제프리존특구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1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가 규제프리존특구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안 제102조)
- 규제프리존특구 내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103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기존의 법률 명칭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도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13호)
-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특례를 받은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5조)
-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승인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함(안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 지역혁신성장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86조부터 제92조까지)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2018. 8.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완화구역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 규제프리존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특구를 지정함(안 제73조 및 제74조)
-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특구 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97조)
- 규제프리존특구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8조)
- 규제프리존특구 내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8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대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가 녹음기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범죄현장, 즉 피고인이 말도 못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영유아가 울음 소리를 내는 현장을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이 이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보호자가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아동학대 현장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피고인이 아동학대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자백 이외의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됨
 - 특히,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인 경우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어 아동학대 범죄 처벌의 흠결이 지적됨
 - 한편 대법원은 최근 상해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악'하는 사람의 비명소리와 '우당탕'하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녹음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주요내용

-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 '대화'를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장에서 육성으로 말을 주고 받는 의사소통행위(다만, 의사전달이 아닌 비명소리, 울음소리, 탄식 등은 제외)로 정의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8. 8. 3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제주 서귀포에서 비행 중이던 관광용 열기구가 강풍으로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사망하고 함께 탑승했던 관광객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사고가 발생한 열기구는 현행법령상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인 '기구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서, 바람, 눈, 비 등과 같은 기상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있어 기상조건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상상태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열기구, 무인비행장치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기상 조건 등 비행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조종사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비행안전 및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7조제4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신뢰성 기준 규칙 발표 (2018. 7. 19.)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북미전기신뢰성기구가 전력회사의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기반시설보호 신뢰성 표준 CIP-008-5》 개정안을 마련 하도록 한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신뢰성 기준 규칙》을 발표함 (2018. 7. 19.)

▶ 개요

-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¹⁾는 북미전기신뢰성기구²⁾가 《주요기반시설보호 신뢰성 표준 CIP-008-5³⁾》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신뢰성 기준 규칙》⁴⁾을 발표함
 - 현행 《주요기반시설보호 신뢰성 표준 CIP-008-5》에 따르면 전력회사는 중요기반시설을 훼손하거나 중단한 사이버보안사고만 보고하여야 함
 - 《주요기반시설보호 신뢰성 표준 CIP-008-5》 개정안은 전력회사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이버보안사고의 범위를 확대함
 - ※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신뢰성 기준 규칙》은 연방 공보에 게재된 지 60일 후, 효력 발생

▶ 주요내용

- 전력회사는 중요기반시설이 훼손되거나 중단된 사이버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보안경계, 전자접근제어, 모니터링시스템을 손상시킨 사이버 위협이나 손상시키려는 시도도 보고해야 함
 -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실패한 로그인 및 액세스 시도의 날짜, 시간도 보고
- 전력회사는 북미전기신뢰성기구가 각 전력회사들의 사이버보안사고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함
- 전력회사의 사이버보안사고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중요기반시설의 손상이나 중단을 확인한 시점부터 1시간 내, 무단 접근 처럼 위험도가 낮은 사건은 8시간에서 24시간 내임

1)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미국의 전력망을 관리·감독하며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2)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 미국 내 전력계통을 감시·관리하는 기구
 3)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Reliability Standard Cyber Security-Incident Reporting and Response Planning
 4) Order No. 848, Final rule. Cyber Security Incident Reporting Reliability Standards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전력회사들이 제출한 사이버보안사고 보고서는 북미전기신뢰성기구, 전기정보공유분석 센터⁵⁾, 국토안보부 사이버 비상대응팀⁶⁾과 공유됨
 - 북미전기신뢰성기구는 각 전력회사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매년 미국연방에너지규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북미전기신뢰성기구는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신뢰성 기준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요기반시설보호 신뢰성 표준 CIP-008-5》 개정안을 제출해야 함

▶ 전망

-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전력회사들이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공유된 사이버위협의 범위와 빈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력회사의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Reference

<https://www.ferc.gov/media/news-releases/2018/2018-3/07-19-18-E-1.asp#.W3u5OkknZ9B>

<https://www.jdsupra.com/legalnews/ferc-requires-expanded-cyber-incident-97621/>

<https://www.tdworld.com/grid-security/ferc-requires-expanded-cyber-security-incident-reporting>

5) E-ISAC(Electricity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북미전기신뢰성기구가 운영하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수집·분석 센터로써 북미 전역의 전력 시스템 운영자에게 보안 서비스 제공

6) ICS-CERT(Industrial Control Systems Cyber Emergency Response Team). 미국 국토안보부 내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팀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사이버보안 진단·완화 증진법안 가결 (2018. 7. 24.)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국토안보부의 '상시적 진단·완화(CDM)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규정한 《사이버보안 진단·완화 증진법》이 통과됨 (2018. 7. 24.)

▶ 개요

- 《국토안보법》¹⁾을 개정하여, 국토안보부가 2012년부터 실시 중인 CDM 프로그램²⁾의 시행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CDM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사이버보안 진단·완화 증진법》³⁾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함
 - 지난 7월 18일 동 법안을 발의한 존 랫클리프(John Ratcliffe) 의원은 법안 통과 시 민간의 첨단 기술을 반영한 CDM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

▶ 주요내용

- 국토안보부 장관은 CDM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 및 유지해야 하며, CD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 데이터 보안, 사이버보안 위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시각화 기능 개발 및 제공
 - 셰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⁴⁾, 공동구매, 포괄주문계약⁵⁾ 등 정보시스템 운영비용의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달방식 채택
 - 정부기관의 정보보안 우선순위 설정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원
 - CDM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조직 내 사이버보안 위험 및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보고하기 위한 정책·절차 개발

1)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의 230절(Section 230) 개정

2) Continuous Diagnostics and Mitigation Program. 연방정부 네트워크·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우선순위에 따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3) Advancing Cybersecurity Diagnostics and Mitigation Act(H.R.6443)

4) 조직 경영에서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여러 부서가 공유해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서비스 이용법

5)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주문의 계약형태로 구매자와 공급자 간 사전에 가격과 납품기한, 계약조건을 정하고 해당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필요시마다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공급받는 방식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국토안보부 장관은 CDM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고 기존에 사용된 기술을 개량하여야 함
- 국토안보부 장관은 CDM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아래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여야 함
 - 적시적이고 실용적이며 적절한 사이버보안 위험 정보와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분석 자료의 실시간 제공
 - CD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분석 및 기타 결과물 공유
 -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커뮤니케이션통합센터⁶⁾에 CD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모든 정보와 평가, 분석 자료 및 원자료 제공
 -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공
-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내에 CDM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함
 - 전략에는 ▲CDM 프로그램의 개시일부터 동 법의 시행일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이 프로그램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 ▲CDM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수단과 기능, 서비스 등의 도입과 운영과 관련된 장애 요인 및 정부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 ▲CDM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트워크, 기기, 데이터 및 정보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전망

- 미 의회는 국토안보부의 CDM 프로그램을 연방기관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방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CDM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구식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보임

※ Reference

- <http://www.executivegov.com/2018/07/house-committee-approves-bill-that-seeks-to-codify-dhs-cybersecurity-program/>
<https://www.fedscoop.com/house-bill-aims-make-dhs-cyber-program-law/>
<https://fcw.com/articles/2018/07/19/cdm-dhs-bill-ratcliffe.aspx>

6)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미 오하이오 주지사,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채택 증진 및 블록체인 데이터 합법화 법안에 서명 (2018. 8. 3.)

오하이오 주지사가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을 법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기록 및 계약을 전자기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 (2018. 8. 3.)

▶ 개요

-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식(John Kasich) 주지사가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데이터 침해사고로 피소된 민사소송에서 적극적 항변¹⁾권을 인정하는 《Senate Bill 220》에 서명함
 - 동 법은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록과 계약을 전자기록의 일부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²⁾하며, 11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후, 합리적인 정보보호 통제조치를 취하지 못한 혐의로 소송에 연루된 기업이 동 법이 정한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적극적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사이버보안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적극적 항변권 행사 가능
 - 동 법안에서 인정하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에는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³⁾와 SP 800-171⁴⁾, SP 800-53⁵⁾, 연방 위험 및 권한 관리 프로그램(FedRAMP)⁶⁾ 보안평가 프레임워크, 인터넷 보안센터(CIS)의 효율적 방어를 위한 핵심보안조치⁷⁾, ISO/IEC 27000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이 있음

1) Affirmative Defense. 피고가 원고의 신청사유를 부정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새로운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고나 검찰을 패소시키고 면책 받을 수 있음(최은희, "미국판례법으로서의 저작권 남용 항변에 관한 연구", 2004)

2) 블록체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은 본래 별도 법안 《SB 300》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일부 내용이 《SB 220》에 추가됨

3) F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상황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포함

4) 비연방정보시스템 및 조직의 비기밀통제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 가이드

5) 연방정보시스템과 조직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 가이드

6)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공공분야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기업이 채택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개정판이 발표된 경우,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도록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함
-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은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의 안전성과 기밀성을 보호하고,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개인의 신원도용이나 기타 사기를 일으킬 수 있는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의 규모와 범위는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기업 활동의 성격과 범위, 보호 대상 정보의 민감성, 정보보호를 개선하고 취약점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의 비용과 가용성, 기업이 활용 가능한 자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록이나 계약은 전자기록으로 간주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간주됨

▶ **전망**

- 정부와 산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기업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동 법의 시행으로, 오하이오주 기업들은 한층 적극적으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채택에 나설 전망이며 이에 따라 주내 사이버보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임

※ **Reference**

<https://www.ethnews.com/stripped-down-version-of-ohio-blockchain-bill-signed-by-governor>

https://www.tuckerellis.com/news_publications/ohio-bill-proposes-safe-harbor-against-breach-suits-to-businesses-maintaining-recognized-cybersecurity-programs

<https://www.legislature.ohio.gov/legislation/legislation-summary?id=GA132-SB-220>

7) Center for Internet Security Critical Security Controls for Effective Cyber Defense. 사이버보안 비영리기구 인터넷보안센터가 IT시스템과 데이터 보안을 위해 만든 표준

영국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 의견수렴 개시 (2018. 7. 19.)

영국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가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8월 31일까지 수렴하기로 함 (2018. 7. 19.)

▶ 개요

- 2016년 11월 영국 정부는 2016-2021년 국가사이버보안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¹⁾을 발표하고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는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²⁾ 8월 31일까지 수렴하기로 함
 - 의견수렴의 주요 목적은 2021년까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사이버보안협의회(UK Cyber Security Council) 설립 등에 관한 여론을 확인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함
 - 2019년 말까지 사이버보안 업계와 정부에서 널리 인정받는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전문가 경력개발경로 수립의 초기 단계를 이행
 - 2020년까지 사이버보안 최고전문가에 왕립헌장³⁾을 수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이버보안 전문성을 향한 의지 고취
 - 2021년까지 사이버보안산업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버보안 경력개발경로 종합프레임워크 수립
-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업 특성상, 윤리적 고려와 책임이 요구되며, 이에 명확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윤리강령 마련 추진

1) 디지털 시대에 영국의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한다는 비전하에 세 가지 목표(Defend, Deter, Develop)를 설정하고 5년간 19억 파운드를 투자해 영국 사이버보안의 획기적 개선을 추구함

2) Government Consultation: Developing the Uk cyber security profession

3) Royal Charter. 영국 국왕이 특허장을 교부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는 공식 문서

해외 입법 동향 **영국**

- 2019년 말까지 사이버보안 전문가집단의 자발적 동의하에 사이버보안 산업분야 전반에 적용 가능한 윤리강령 초안 마련
- 2020년 말까지 윤리강령의 초기적 시행 및 윤리강령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강령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사이버보안 전문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더욱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2019년 말까지 사이버보안 전문가집단의 합의를 통해 차세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과 사이버보안 산업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명확한 강령을 제시하여야 함
 - 2020년 말까지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이버보안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전국 규모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산업, 정부, 교육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 상기 목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계 주도로 사이버보안협의회 설립 추진
 - 사이버보안협의회는 영국 전역의 학계, 산업계, 정부에 속한 다양한 분야의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전문가 조직을 대표하며, 공익을 위한 비영리 조직이 되어야 함
 -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위한 권위 있는 자격증의 개발과 사이버보안 전문가집단 간의 네트워킹 역할을 수행

▶ 시사점

- 영국 정부가 2016년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을 발표한 이후에도 사이버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한층 중요하게 인식하고 기존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경력개발방안과 함께 차세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행목표를 제시

※ Reference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developing-the-uk-cyber-security-profession>

<https://www.infosecurity-magazine.com/news/uk-gov-launches-consultation-for/>

<https://www.ukauthority.com/articles/government-proposes-new-cyber-security-council/>

영국, 드론 운항 및 조작자 요건 강화한 항공운항명령 2018 시행 (2018. 7. 30.)

드론의 중량·고도, 구역별 운항 요건, 드론 등록 및 드론 조작 테스트 의무화 등 드론 관련 조항을 보완·강화한 《영국 항공운항명령 2018》이 발효됨 (2018. 7. 30)

▶ 개요

- 2018년 7월 30일을 기점으로 《영국 항공운항명령 2018(The Air Navigation (Amendment) Order 2018)》이 발효됨
 - 2018년 5월 30일에 공포된 이 명령은 기존 명령인 《영국 항공운항명령 2016(UK Air Navigation Order 2016)》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이하 '드론'¹⁾)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항임
 - 일부 조항은 행정 당국과 민간에서의 규제 대응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
- 최근 영국에서는 상용 드론 사용 급증에 따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히 필요했던 상황
 - 영국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에 따르면, 상용 드론 면허는 2016년 2,500건에서 2017년 3,800건으로 1년 동안 52%가 증가했으며, 드론 사고는 2016년 71건에서 2017년 93건으로 증가하였음

▶ 주요내용

- 2018년 7월 30일을 기점으로 공식 발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중량 및 고도 제한)** 기존 명령 94조(Article 94)에서는 7킬로그램 초과 드론에 대해서만 운항 고도를 최대 400피트로 제한했으나, 개정 명령에서는 94A조를 신설함으로써 모든 드론의 운항 고도를 최대 400피트로 제한
 - **(구역별 운항)** 신설된 94B조에서 비행 제한 구역 위 또는 근처에서 드론 운항 관련 규제를 적용했으며, 비행 제한 규제는 내부 구역과 외부 구역으로 구분²⁾하여 적용

1) 동 명령에서 정한 소형 무인 항공기(Small Unmanned Aircraft, SUA)는 기구나 연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무인 항공기로, 연료를 비롯한 일체의 탑재 장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중량이 20kg을 넘지 않아야 함

2) 내부 구역(Inner Zone)은 비행장 경계선 이내의 지역, 외부 구역(Outer Zone)은 비행장 경계선과 비행장 외부 1km 반경 사이 지역을 각각 의미

해외 입법 동향 영국

- 94B조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시설³⁾을 갖춘 비행장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내부 구역과 외부 구역 모두 고도에 상관없이 드론 운항을 전면 금지
 -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행장에서의 드론 운항은 최대 고도 400피트 범위 내에서 가능함
 - 그러나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없는 비행장에서 드론을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역의 경우 해당 교통관제시설의 허가를, 외부 구역의 경우 영국민간항공국의 허가를 각각 필요로 함
- 2019년 10월 이후부터 발효 예정인 조항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담당자(person in charge)'로 통합되어 있던 표현을 '드론 관리자(SUA Operator)'와 '드론 조종자(Remote Pilot)'로 각각 분류하여 각 지위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구체성과 실효성 확보
 - 드론 관리자는 중량 250그램 미만의 모든 드론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업무는 영국민간항공국이 관장(94C조, 94D조)
 - 중량 250그램 이상의 드론 조종자는 항공기 원격 조종 능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테스트 업무는 영국민간항공국이 관장(94E조, 94F조)
 - 드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조종 능력 테스트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 부과

▶ 시사점

- 드론 중량에 상관없이 운항 고도를 제한함으로써 최근 늘어나고 있는 드론 사고에 대비해 이용 규제를 강화함

※ Reference

-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drone-laws-bring-added-protection-for-passengers>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8/623/made>
<https://www.suasnews.com/2018/07/uk-caa-reminds-drone-operators-of-new-rules-from-july-30th-2018/>
<https://publicapps.caa.co.uk/docs/33/CAP1687-SUAANOAmendmentOrder-3.pdf>
<https://consortiq.com/media-centre/blog/air-navigation-amendment-order-2018>

3) Air Traffic Control Unit. 관제구역·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 등이 있음

일본 정부, 사이버보안전략 2018 발표 (2018. 7. 27.)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관계 당국의 공조 강화와 도쿄 올림픽 이후 사이버보안의 전략적 지속성을 강조한 《사이버보안전략 2018》이 일본 각의에서 통과됨 (2018. 7. 27)

▶ 개요

- 사이버보안전략본부가 마련한 《사이버보안전략(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戦略) 2018》이 각의 결정을 거쳐 승인됨
 -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사이버보안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의 안전한 사업 환경 구축과 함께 2020년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 이후에도 이 전략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동 전략은 2015년 9월에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보안 전략의 기본원칙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시책 등을 큰 틀에서 계승
- 사이버보안 전략은 최초 수립 당시 3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했으며, 이번 각의 결정에 앞서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¹⁾는 2018년 6월 《사이버보안전략 2018》 초안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내용

- 중점 시책으로 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지속적 발전 ②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③ 국제 사회 평화·안정 및 국가 안전 보장 기여 ④ 범부처 협력 대책의 4개 항목이 선정됨²⁾

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지속적 발전

- 기업 경영진은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인식하여야 하며, 주주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보안 설명 책임을 완수하고 조직 전체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설계, 생산, 제조, 관리, 유통, 판매 및 협력 업체 등 공급망 전체의 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중소기업 보안 대책 강화, IoT 등 신기술 분야 보안 환경 정비 등도 중점 영역에 포함됨

1) National center of Incident readiness and Strategy for Cybersecurity

2) 2015년과 2018년의 사이버보안전략의 구조는 큰 틀에서 동일하나, 사이버보안전략 2018은 안전한 공급망을 통한 가치 창출, 대학 교육 및 연구 환경 보호와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의 전략 지속성, 대규모 사이버 공격 대처 역량 강화, 국가 방어력과 상황 파악 능력 강화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강조

해외 입법 동향 **일본**

- ②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연계 체제 강화, 금융·산업 및 공공 분야 등 주요기반시설의 방어 체제 정비, 국민 보안 의식 제고 및 보안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
 - 주요기반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대책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 공공서비스장애대책 수립 등을 통해 안전 기준을 향상시킴
 - 2020년경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보안 운용 경험과 노하우, 보안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일본 정부는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주요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처, 대회조직위원회, 지자체 및 주요기반서비스 사업자 간 사이버보안 위협대응 공조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보안대응조정센터(CSIRT)³⁾를 설치
- ③ 국제 사회 평화·안정 및 국가 안전 보장 기여
-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적인 '자유·평등·안전' 확보와 그 이념을 확산시키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
 -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규제 적용과 관련된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조정 역할에 관계 부처가 참여
- ④ 범부처 협력 대책
- 일본 각 정부 부처는 실무 및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역량 있는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 IoT나 AI 등의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보안 연구 개발 강화 및 전 국민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평가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관계 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사이버보안전략 2018》이 장기적으로 일본 사이버보안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임

※ Reference

- <https://japan.zdnet.com/article/35123036/>
- <https://www.nisc.go.jp/active/kihon/pdf/cs2018.pdf>
- https://www.nisc.go.jp/active/kihon/cyber-security-senryaku_2018.html
- <https://www.nisc.go.jp/active/kihon/pdf/cyber-security2018-gaiyo.pdf>
- <https://www.nisc.go.jp/active/kihon/pdf/cs-senryaku-kakugikettei.pdf>

3)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중국 공업정보화부, 기업 클라우드화 추진 실행지침(2018~2020)에 관한 통지 발표(2018. 8. 10.)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0년까지 100만 기업의 클라우드화와 100건 이상의 클라우드 모범 활용사례 확보를 목표로 한 《기업 클라우드화 추진 실행지침(2018~2020)에 관한 통지》를 발표 (2018. 8. 10.)

▶ 개요

-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기업 클라우드화 추진 실행지침(2018~2020)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채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기로 함
 - 2020년까지 100만 기업의 클라우드화와 100건 이상의 클라우드 모범 활용 사례 마련을 목표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접근방식과 클라우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

▶ 주요내용

- 2020년까지 기업 클라우드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관리 측면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해 100만 기업의 클라우드화를 달성하고,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100건 이상의 활용사례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업 클라우드화는 기업의 발전능력 제고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비용 효율성, 가용성, 확장성, 보안 등에 대한 연구 분석·이론적 검증과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해 클라우드화의 편익과 위험 등을 충분히 평가해야 함
 - 기업은 사업적 특성과 클라우드의 특성을 고려해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하며, 클라우드 도입 시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등 각 방면의 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대기업은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사설(private) 클라우드를, 고객과 공급업체, 직원을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에는 공공(public)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사설과 공공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도 고려할 수 있음

해외 입법 동향 **중국**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을 임대해 필요에 따라 스토리지, 컴퓨팅, 네트워크와 기타 인프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영관리 수준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 경영, 재무 등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음
- 기업은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자원, 네트워크 자원, 보안 서비스 등의 인프라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미들웨어 플랫폼 등의 플랫폼 시스템 서비스, 협업 솔루션과 경영관리 등의 비즈니스 응용 서비스를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 기업들은 수요분석, 타당성 평가,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의 선정과 결정,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유지관리 보장 등 클라우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클라우드 구현 가능
- 기업들은 시스템의 보안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파악해 기업 정보시스템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뒤, 도입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함
- 각 지방정부는 정부 부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업체, 클라우드 도입 기업의 다자간 협력추진체계를 수립하고, 기업 클라우드화 전문가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함
- 각 지역의 공업정보화 주관부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에 정보시스템 자문을 비롯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능력평가, 서비스 신뢰도 평가기준 등을 개발해 클라우드 도입 기업의 서비스 수준과 품질을 제고함

▶ 시사점

- 중국은 국무원이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발전을 통한 정보산업 신업태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¹⁾을 발표한 이래, 공업정보화부가 2017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3개년 행동 계획(2017~2019)》²⁾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클라우드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번 실행지침을 통해 기업 클라우드화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

※ Reference

<http://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22/c6309203/content.html>

https://www.marbridgeconsulting.com/marbridgedaily/2018-08-13/article/113214/chinas_miit_introduces_3_year_guidelines_for_enterprise_adoption_of_cloud_s

1) 클라우드 컴퓨팅 주력기업 육성 강화,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함
 2) 2019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규모 4,300억 위안(약 70조 원) 달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 기술을 대폭 발전시켜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국제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계획

중국 공업정보화부, 2018 통신·인터넷 산업 네트워크 보안검사 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 (2018. 8. 13.)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18 통신·인터넷 산업 네트워크 보안검사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2018. 8. 13.)

▶ 개요

-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통신·인터넷 산업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전법》 등에 의거하여 《2018 통신·인터넷 산업 네트워크 보안검사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 통신·인터넷 사업자는 9월 말까지 자사의 사이버보안 현황에 대한 자체 보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각 지역의 통신관리국은 전문기술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자 일부에 대해 보안검사를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공업정보화부에 보안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주요내용

- **(목적)** 사이버강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의 달성과 《네트워크안전법》의 시행을 가속화하며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 또한, 통신·인터넷 산업의 사이버위협 방어의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제고하고 공공인터넷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검사 대상)** 기간통신사업자¹⁾와 인터넷기업, 도메인 등록관리·서비스 기업이 구축 및 운영하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중점 검사대상으로 하며 상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통신과 인터넷 산업의 네트워크 기초설비, 사용자정보 및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시스템, 빌링시스템²⁾, 도메인명 시스템, 이메일 시스템, 모바일 앱스토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보안감시 카메라, 기타 주요 IoT 플랫폼 등
- **(검사 내용)** 《네트워크안전법》과 《통신망 안전방어관리방법》³⁾,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규정》⁴⁾ 등 관련 법률·법규의 준수 현황 및 보안 취약점을 비롯한 사이버위협의 존재 여부를 점검함

1)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 TV&라디오

2)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사용요금을 계산 및 청구하고 수납하는 등 요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

3) 通信网络安全防护管理办法. 공업정보화부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으로, 통신망의 등급을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 공공이익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른 안전 조치 이행을 요구

4)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规定. 공업정보화부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으로, 통신과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사용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안전보장조치 등을 포함

해외 입법 동향 **중국**

- **(진행방식)** 각 사업자는 관련 법률과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자사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해 개선조치를 취하며, 자체검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방호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수립해 시정함
 - 2018년 9월 31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 그룹사와 도메인 등록관리 및 서비스 사업자는 보안검사 실시결과를 공업정보화부 네트워크안전관리국에 보고하며, 각 성에 위치한 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와 인터넷 기업들은 각 지역 통신관리국에 보고함
 - 각 지역 통신관리국은 각 성의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최소 10곳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전문기술기관에 위탁해 현장검사와 서류검사 등의 방식으로 보안검사를 실시하며, 10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 네트워크안전관리국에 보고함
- **(업무 요구사항)** 각 통신관리국은 보안검사가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사방식과 절차를 표준화하며, 검사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함
 - 검사를 위탁받은 전문기술기관은 보안 취약점이나 기타 보안 위험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사업자에게 통지해 개선을 요구하며, 사업자는 검사에서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 위험을 철저히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한 후 통신관리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시사점

- 공업정보화부는 2014년 8월 《통신·인터넷 산업 네트워크보안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⁵⁾을 발표한 이래 매년 통신·인터넷 산업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검사를 실시해 통신과 인터넷 산업 전반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음

※ Reference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4509650/c6315104/content.html>
<http://tech.caijing.com.cn/20180813/4499838.shtml>

5) 关于加强电信和互联网行业网络安全工作的指导意见. 네트워크 인프라와 운영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보안 사고에 대한 응급대응능력 개선, 네트워크 정보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통신과 인터넷 산업이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규범성 문건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1 (August 2018)



| 발 행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5118

| 기획 · 편집 | 법제연구팀

| 발간 · 배포 | www.kisa.or.kr

- | |
|--|
| <p>※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p> <p>※ 본 자료 내용의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
|--|